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61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김도읍·장동혁·이헌승

신동욱 • 구자근 • 권영진

조배숙 • 박형수 • 김성원

인요한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 수는 1,5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고,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임.

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 탑승 등 교 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개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8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8(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이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의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(휠체어 탑승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)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연구개발비"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이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-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구개발비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5조의8(교통약자 친화 차량
	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) ①
	내국인이 「교통약자의 이동편
	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의 교
	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
	춘 차량(휠체어 탑승설비 등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
	<u>갖춘 차량을 말한다)의 연구개</u>
	발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
	하 이 조에서 "연구개발비"라
	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
	발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
	금액을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
	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
	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
	세에서 공제한다.
	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
	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
	<u>야 한다.</u>
	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구개
	발비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

<u>필요한</u>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